

# 한일합병 이후 근대 주권 개념의 변용 및 주권 용어의 법정화(法定化)

---

왕신(王晨)

저장대학(浙江大學) 박사후 과정, 역사학 전공

wangchen92@naver.com

---

- I. 머리말
  - II. 재미한인의 주권 인식
  - III. 재중한인의 주권 인식
  - IV.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에서 주권 용어의 도입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20년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 한국학 씨앗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20-INC-2230008). 또한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제4장을 바탕으로 보충·확대했음을 밝힌다.

## I. 머리말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1차 개헌을 하기 전인 1919년 4월 11일,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반포하였으나 여기에는 ‘주권’이란 용어가 없었다.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1차 개헌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에 따라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5條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第6條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 範圍內에서 臨時大統領에게 委任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 용어가 헌법에서 명시된 획기적인 일이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서는 모두 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주권의 의미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연유된 것이며 후일 서유럽에서 일정한 역사적 연관 속에서 만들어진 정치제도 또는 질서에 관한 문제이다.<sup>1</sup> 중세 서구 사회에서 주권은 주로 봉건영토에 대한 통치권이었으며 중세 말기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는 로마 교황과 구별되는 최고 통치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주권 개념의 역사적 형성 문제는 근대 국가와

---

1 “주권(sovereignty)이란 말은 이미 성경의 창세기(15:2)에서부터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여호와라는 말이 도처에서 나온다. 이처럼 신학 개념에서 유래하는 주권을 보냈던 자신의 국가론의 주제로 삼았으며, 홉스 역시 군주주권을 주장하였다.” 김효전, 『헌법』(小花, 2009), 54쪽; 왕신, 「한말 법학 교과서에 나타난 주권 개념 연구: 『헌법(憲法)』, 『법학통론(法學通論)』, 『평시 국제공법(平時 國際公法)』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46호(2021), 197쪽.

근대 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련된 정치 투쟁 및 그에 수반된 이론적 논쟁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sup>2</sup>

근대 주권 개념은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성립된 주권국가 체제가 비유럽지역으로 팽창하면서 성립된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sup>3</sup> 이후 더욱 보완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널리 적용되었던 국제법 저서인 『만국공법』에 의하면 대내적 주권은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이 있으며 내공법(內公法)이나 국법에 의해 규정된다. 대외적 주권은 본국의 자주성으로 가질 수 있으며 외교법(外公法)이나 공법에 의해 규정된다.<sup>4</sup> 1870~1880년대부터 근대 서양의 주권 개념(sovereignty)이 『만국공법』을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의 주권이 갈수록 줄어들어 드는 현실에 주권 개념이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는 36여 년간의 일제강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고석로(高錫魯, 1841~1922)는 일찍이 1895년에 망국(亡國)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만고천하(萬古天下)에 흥(興)해

---

2 박상섭, 『국가·주권』(소화, 2008), 184쪽.

3 전재성, 「탈식민 국제정치학 이론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59권 제4호(2019), 174쪽;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Sovereignty(<https://plato.stanford.edu/entries/sovereignty/>); 구선영, 「국제관계 형성의 기점으로서의 베스트팔렌 신화 재고: 각국의 역사적 문맥에 배태된 다양한 주권 개념 형성에 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59권 제2호(2019), 9~12쪽 참조.

4 “治國之上權，謂之主權，此上權，或行於內，或行於外，行於內，則依各國之法度，或寓於民，或歸於君，論此者，嘗名之為內公法，但不如稱之為國法也，主權行於外者，即本國自主，而不聽命於他國也，各國平戰，交際，皆憑此權，論此者，嘗名之為外公法，俗稱公法即此也。”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韓國近代法制史料叢書-第1卷 萬國公法』(亞世亞文化社, 1981), 92쪽; 權純永 等著, 『法律用語辭典』(法典出版社, 1979), 51쪽; “獨立自主，完全由自己支配的權力：近代構成國家的四要素之一，是國家至高無上的政治權力，對內具有排外的管轄權，對外則有不受他國干涉的權力。”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6版)(商務印書館, 2012), 1700쪽; 王晨, 「개항기 조선에서의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전래」, 『韓國史學報』 제80호(2020), 176쪽.

보지 못한 나라가 없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나, 예전에 망국이라 함은 토지와 인민은 그대로 두고 그 군위(君位)만 빼앗는 것으로 흥이라 망이라 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토지와 인민과 주권(主權)을 병탄(竝呑)하는 것이 망국"이라고 하였다.<sup>5</sup> 이로써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이후 재차 부각된 주권 문제에 대해 한민족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1910년대 《신한민보》에 게재된 주권 관련 글을 살펴봄으로써 1910년대 재미한인의 주권 인식을 살필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중 한인의 주권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1917년 7월에 공포된 「대동단결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등 대표적인 헌법문서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이로써 한일합병 이후 근대 주권 개념의 변용 및 주권 용어의 법정화(法定化) 과정을 규명하기에 목적을 둔다.

## II. 재미한인의 주권 인식

구한말 한민족의 해외이주가 증가했다. 특히 1900년대 후반기부터 경제적이거나 정치적 이유에 의한 이주자들이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러 신문들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sup>6</sup> 《新韓民報》는 1900년대 후반기부터 미주에서 발간된 교포신문으로, 1910년대 재미 한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잡지로 꼽을 수 있다. 《신한민보》는 1905년 11월 22일자로 창간되어 1909년

5 권오영, 『근대이행기의 유럽』(돌베개, 2012), 38~39쪽.

6 최기영, 「특집: 오늘의 한국사연구: 구한말 『공립신보』, 『신한민보』에 관한 일고찰」, 『동아연구』 제17권 제0호(1989), 575쪽.

1월 27일자까지 총 118호가 발행된 《共立新報》를 1909년 2월 10일자로 제목을 바꾸면서 발행한 것이다.<sup>7</sup>

《신한민보》의 주필은 정재관, 최정익, 이항우, 박용만, 이대위 등이었다.<sup>8</sup> 이 중에서 박용만은 1911년 2월 8일 제217호부터 《신한민보》의 편집인을 역임하였으며<sup>9</sup> 「光武帝」<sup>10</sup>, 「自嘲自戒」<sup>11</sup>라는 시문을 싣기도 했다. 1909년 8월 4일 《신한민보》에 게재된 「大呼國民」이란 글에는 대한제국의 위급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국권과 민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오호라 대한제국에 국민이 잇는뇨 업는뇨 국민이 잇다 흘진디 반드시 국권이 잇슬터는 일본 통감의 권리가 핑탕흐얏스니 국권이 잇노라 말흐슈 업고 또 국민이 잇다 흘진디 민권이 쏘흔 잇슬터이느 민적 정부의 법률이 가혹흐얏스니 국민이 잇노라 말흐슈 업는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은 국권도 업고 민권도 업단 말이오 하야 민권이 업스면 나라이 펍망 흘것시오 국권이 업스면 국민이 멸망 홀이로다. [...] 한국 인민들이여 원슈의 학디받기 슬치 안소? 슬커던 어셔받비 국민이 되라! 남의 나라들은 독립하고 잘 사는 것이 부럽지 안소? 부럽거든 어셔받비 국민이 되라!<sup>12</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필자는 ‘대한제국’은 존재하지만 “일본 통감의

---

7 崔起榮, 「해제」, 『新韓民報(全27卷)-第2卷 新韓民報, 1909.2~1911.6(第119~235號)』(景仁文化社, 1991), I 쪽;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신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905년 11월 22일자로 창간되었는데, 同種相保를 목적으로 조직된 공립협회의 기관지였다.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1일에 공립협회와 하와이 韓人合成協會가 국민회로 합동하면서 『공립신보』를 2월 10일자로 改題한 것이며 국민회 북지지방총회의 기관지였다.” 위의 논문, 606쪽.

8 崔起榮, 위의 논문(1991, 「해제」), III쪽.

9 《新韓民報》, 1911년 2월 8일자.

10 「光武帝」, 《新韓民報》, 1911년 4월 26일자.

11 「自嘲自戒」, 《新韓民報》, 1911년 5월 3일자.

12 「大呼國民」, 《新韓民報》, 1909년 8월 4일자.

권리가 평탄하였스니 국권이 있노라 말할슈 업고”라 하였다. 대한제국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독립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주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적 정부의 법률이 가혹하였스니 국민이 있노라 말할슈 업느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국민’의 민권이 부재함을 고발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하고 잘 사는 것”이 부럽다면 나라가 주권국이 되어 ‘국민’이 “국민”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911년 9월 20일자 《신한민보》 제247호 1면에 실린 「국민적 상식을 備하라」라는 논설은 무형한 국가와 유형한 국가를 논하면서 ‘우리 민족’들은 국민이 될 만한 상식을 예비하노라고 하였다. 또한 동호 4면에는 「國民的常識之一」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국가란 것은 다슬이는 자와 다슬힘을 받는 자의 형테로써 일정한 토지에 조직된 바 계속덕 인류사회라 [...] 一 국가는 반드시 일정한 토지로써 그기초를 삼음 [...] 二 국가는 반드시 인류의 단테로써 기초를 삼음 [...] 三 국가는 반드시 다슬이는 자와 다슬힘받는 자가 병존함 [...] 四 국가는 생명이 업는 기계와 又히 조직한 집합테가 안이라 생명이 있고 활동이 있는 유기체(有機體)로 조직한 생활물이로다<sup>13</sup>

이 글에서 국가는 반드시 일정한 토지로써 그의 기초를 삼음, 국가는 반드시 인류의 단체로서의 기초를 삼음, 국가는 반드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병존함, 그리고 국가는 생명이 있고 활동이 있는 유기체로 조직한 생활물이라 서술하였다.<sup>14</sup> 요약하자면 국가는 토지, 인류의 단체

13 「國民的常識之一」, 《新韓民報》, 1911년 9월 20일자; 이에 대해 1909년 3월 10일에 「위대한 국민의 정신」, 1909년 4월 21일에 「국민단체는 국가의 생명이라」, 1909년 8월 4일에 「大呼國民」, 1909년 11월 17일에 「國民說」이란 글이 발표된 바 있다.

14 「國民的常識之一」, 《新韓民報》, 1911년 9월 20일자.

즉 국민, 주권으로 구성된 유기체(有機體)라 할 수 있다.

또한 《신한민보》에는 1913년 10월 31일부터 정체 요령(政體 要領)에 관한 일련의 글을 연재하면서 정부<sup>15</sup>, 사회의 진보(가족, 족속, 나라)<sup>16</sup>, 정부의 모범<sup>17</sup>, 압제군주정치<sup>18</sup>, 헌법군주정치<sup>19</sup> 등을 소개한 바 있다.

금일세계에 있는 정부 四十여처가 있는데 그중에三種 정부가 있스니  
一은 압제군주정더니 이는 남군한사람이 무한한 권세를 잡고 전국일을  
모함되로 힘하는 것이오

二는 헌법정더니 이는 남군이 그나라 정권을 박성의 대표 되는 국회의원으로  
더부러의론하야 힘하는것이오

三은 민주정더니 이는 그나라 정권이 완전히 그 나라국민의게 있어서 그  
박성이 대표자를 선거하야 정권을 실행케 하는 것이라<sup>20</sup>

위의 글은 정부의 분류에 있어 압제군주정치, 헌법정치, 민주정치 3가지로 나누었다. 즉 정체는 다르더라도 모두 독립국가 즉 주권을 가지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정체를 열거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조선에 행하는 통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독립을 촉구하였다. 이는 1915년 9월 2일자 「망국기념일에 내 감상」이란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설에는 호랑이와 같은 일본에 대해 무엇보다 국혼(國魂)과 국수(國粹)를 보유하게

15 「政體要領 一」, 《新韓民報》, 1913년 10월 31일자.

16 「政體要領 二」, 《新韓民報》, 1913년 11월 7일자.

17 「政體要領 三」, 《新韓民報》, 1913년 11월 14일자.

18 「政體要領 四」, 《新韓民報》, 1913년 11월 21일자; 「政體要領 五」, 《新韓民報》, 1913년 11월 28일자; 「政體要領 六」, 《新韓民報》, 1913년 12월 5일자.

19 「政體要領 七」, 《新韓民報》, 1913년 12월 12일자; 「政體要領 八」, 《新韓民報》, 1913년 12월 19일자; 「政體要領 九」, 《新韓民報》, 1913년 12월 26일자; 「政體要領 十」, 《新韓民報》, 1914년 1월 1일자; 「政體要領 十一」, 《新韓民報》, 1914년 3월 12일자 등.

20 「政體要領 三」, 《新韓民報》, 1913년 11월 14일자.

되면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필자가 본국으로부터 나온 모씨의 담화 중에 공감된 몇 가지 내용을 같이 기록하였다.

니디동포가 비록 국가의 주권은 사비앗겨슬지언딩 농업권과 상업권은 잇슬 지니 남짓는 농사야 남하는 장사야 웨일인과 갓치못하야 먹고 오빅과가 풍부한 문전옥답식지 원슈에게깁업시 사양하고 남만췌서간도로 보스짐만 스사던 요<sup>21</sup>

이상에서 살펴본 주권에 관한 몇 가지 글을 분석하면, 일부 글은 직접적으로 주권이나 주권자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이다. 대신에 주권과 주권자의 우회적인 표현인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주권의 사용 빈도에 비해 다수의 글에서 동포, 민족, 민족단합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이 시기 재미한인들은 미국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의 14개조 평화원칙 연설이 이후 세계적인 사조가 된 민족자결권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리로 우리 한인학싱들과 우지인사들이 四면八방으로 모여 드러 혹은 학교에 입학하야 전문덕 하식을 연구하며 혹은 실업에 착슈하야 산업의 실력을 준비하며 또 혹은 종교에 헌신야야 장차 우리 민족의 부활을 □피하난 바 [...] 우리        은 오직 「대동단결」의 힘이 박약함인데 오하요췌에 거류하난 우리 동포들은 항상 이        을 주의 하난 가운데 오늘날 시국문데가 우리 혈관의 피를 싹케하난 동시에 대한인국민회 디방회를 설립하기도 원하 스 니<sup>22</sup>

21 「망국기념일에 내 감상」, 《新韓民報》, 1915년 9월 2일자.

22 「민족자결주의에 대하여」, 《新韓民報》, 1919년 1월 30일자.



1917년 5월 10일에 이용직(李容植)은 영인이 쓴 글을 번역하여 「민족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sup>23</sup> 또한 1917년 9월에 「대동단결선언」 반포에 따라 1917년 9월 20일에 《신한민보》에 「해외 한인 대동단결 선언서」란 글을 발표하면서 「대동단결선언서」 14명 발기인 중 하와이 발기인 박용만 및 선언서의 각지 단체 통합정신을 소개하였다.<sup>24</sup> 이와 같이 동일한 민보 제1면에 「대동단결문제」라는 글에는 대동단결은 금일(今日) 한인의 시활문제라 하면서 단결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였다.<sup>25</sup> 다음 해 1918년 11월 28일 및 12월 5일에 「대한민족의 시국 문제」라는 글이 게재되었으며<sup>26</sup> 1919년 1월 30일에 「민족자결주의에 대하여」라는 논설도 보도되었다.<sup>27</sup> 그리고 1919년 3월 13일부터 《신한민보》에 대한독립선언이나 대한독립선언서 등에 관한 일련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었다.<sup>28</sup>

- 
- 23 「민족주의」, 《新韓民報》, 1917년 5월 10일자; “1910년대 전반에 걸친 민족담론의 대량생산을 거쳐 1910년대 말에 민족 개념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 [...] 이다.” 강동국, 「근대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형성사』(창비, 2009), 287쪽.
- 24 「해외 한인 대동단결 선언서」, 《新韓民報》, 1917년 9월 20일자.
- 25 「대동단결문제」, 《新韓民報》, 1917년 9월 20일자.
- 26 「대한민족의 시국 문제」, 《新韓民報》, 1918년 11월 28일자; 「대한민족의 시국 문제」, 《新韓民報》, 1918년 12월 5일자.
- 27 「민족자결주의에 대하여」, 《新韓民報》, 1919년 1월 30일자.
- 28 「대한독립선언, 대한독립대운동의 대활동」, 《新韓民報》, 1919년 3월 13일자; 「대한독립에 대하여」, 《新韓民報》, 1919년 3월 13일자; 「대한독립선언, 대한독립선언이 벽력같이 진동하여 온다」, 《新韓民報》, 1919년 3월 13일자; 「대한독립선언, 중앙총회장 안창호씨의 주견, 재산과 생명을 아울러 희생합시다」, 《新韓民報》, 1919년 3월 20일자; 「독립 선언이 3천리 청구산하에 전파됨에, 2천5백만 동포는 모두 죽기로 결심한다」, 《新韓民報》, 1919년 3월 20일자; 「대한독립선언, 성공은 협력에 있음」, 《新韓民報》, 1919년 3월 22일자; 「독립선언에 대하여, 해외동포에게」, 《新韓民報》, 1919년 3월 27일자; 「大韓獨立, 우리 민족의 생명이 이에 달렸다, 자유와 생명(1)」, 《新韓民報》, 1919년 4월 3일자; 「대한독립선언서」, 《新韓民報》, 1919년 4월 5일자; 「대한독립, 우리 민족의 생명이 이에 달렸다, 민족 전체의 자각과 활동(2)」, 《新韓民報》, 1919년 4월 5일자; 「대한독립선언서」, 《新韓民報》, 1919년 4월 8일자; 「대한독

### Ⅲ. 재중한인의 주권 인식

중국 관내 지역은 만주 연해주, 미주지역과 더불어 국외독립운동 활동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1910년대부터 다양한 독립운동세력이 수많은 단체들을 결성하면서 1945년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여러 종류의 신문과 잡지들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sup>29</sup> 공식적 문서들을 공포하기도 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많은 애국지사들은 만주로 탈출하였다. 박은식은 그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11년 5월에 국경을 넘어 1912년 3월부터 봉천을 지나 북경·청진·상해·남경·홍콩 등지를 순력하며 망명 지사와 중국인 지사를 만나 독립 운동의 방법을 숙의하였다.

1912년에 박은식은 신규식(申圭植) 등과 상해에서 독립운동단체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고 1915년 신규식과 「신한혁명단(新韓革命團)」, 「대동보국단(大同輔國團)」 등을 조직하였으며 또한 1915년 이상설·신규식 등이 상해에서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을 결성하여 북경에 본부를 두고 광무황제를 옹립하여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추진하였다. 국왕의 망명으로 독립운동의 국제적 지위를 확보해 보자는 계산에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패하게 되었다.<sup>30</sup>

박은식과 달리 신채호는 1910년 한일합병 직전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후 그는 노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양보(大洋報)』와 『권업신문(勸業新聞)』

---

립선언서, 《新韓民報》, 1919년 4월 10일자.

29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집(1998), 1쪽.

30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제9권 제0호(1987), 136쪽.

의 주필로 활동하였고, 3·1운동 이후에는 중국 관내(關內)에서 『신대한(新大韓)』과 『천고(天鼓)』, 그리고 『대동(大同)』을 주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이 시기 신채호는 1910년 2월부터 국권회복 후에 건설해야 할 국가의 정치 체제를 ‘입헌공화국’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그는 ‘입헌국가’에 대한 그의 사상을 피력하여 ‘입헌국가’만이 ‘국민적 국가’이며, 입헌국가가 아니라 한두 사람이 전제하는 전제국가는 세계대세를 거역하는 나라로서 반드시 망한다고 지적하였다.<sup>32</sup> 그는 서양의 예를 들면서 “전제 봉건의 舊陋가 去하고 입헌공화의 복음이 遍하여 국가는 인민의 낙원이 되며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 되어 공·맹의 輔世長民主義가 이에 실행되며 루소의 평등자유정신이 이에 성공되었도다”<sup>33</sup>라고 입헌공화제를 찬양하였다.<sup>34</sup>

이와 유사하게 양계초는 “立憲政體者는 永絶亂萌之政體也라. [...] 立憲政體는 眞可謂國家億萬年有道之長矣라”고 제기한 바 있다.<sup>35</sup> 이와 관련하여 이기(李沂)는 1908년 7월 25일부터 양계초의 저술을 약간 수정하여 『호남학보』에 「정치학설(政治學說)」이란 제목으로 논설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으며 헌법, 민권, 입법권, 입헌정체, 몽테스키외의 분권(分權)설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sup>36</sup> 또한 1909년 1월 25일부터 이춘세가 『기호홍학회월보』에 「정치학설」

31 최기영, 「신채호의 언론활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景仁文化社, 2010), 103~104쪽.

32 『二十世紀 新國民』(『全集』 별집, 229쪽)(신용하,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景仁文化社, 2010), 81쪽에서 재인용).

33 『二十世紀 新國民』(『全集』 별집, 213쪽)(신용하, 위의 논문, 81쪽에서 재인용).

34 신용하,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景仁文化社, 2010), 81~82쪽.

35 「政治學 續」, 『호남학보』 제3호(1908년 8월 25일).

36 李沂, 「政治學說」, 『호남학보』 제2호(1908년 7월 25일); 「政治學 續」, 『호남학보』 제3호(1908년 8월 25일); 「政治學 續」, 『호남학보』 제4호(1908년 10월 25일); 淸儒

이란 제목으로 霍布士學說에 관한 글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으며<sup>37</sup> 글에서 필자가 내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나 전체 내용은 1901년 양계초의 「霍布士學案HOBBS」의 번역문으로 확인된다.<sup>38</sup> 그리고 1908년 7월 1일 게재된 ‘음빙실담총 일우생(飲冰室談叢 一吁生)’은 역술(譯述)한 ‘세계최소민주국(世界最小民主國)’이란 글에서 ‘독립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39</sup>

뿐만 아니라 신채호는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라는 글에서 서언(西諺)을 빌려서 “국이란 일가족의 결집체이며 역사란 일국민의 가보(家譜)”라고 서술하였다.<sup>40</sup> 여기서 “國家란 者는 家族 二字의 大書”라는 서언은 양계초의 「애국론(愛國論)」에서도 인용된 것이 확인된다.<sup>41</sup> 그리고 이종면(李鍾冕)은 1909년 4월 25일에 「支那 梁啓超 新民說」이라는 제목으로 양계초의 「신민설」을 번역하여 게재하였으며 중국은 열강의 민족제국주의를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민족주의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이

梁啓超, 「政治學 續」, 『호남학보』 제5호(1908년 10월 25일); 淸儒 梁啓超, 「政治學(續)」, 『호남학보』 제6호(1908년 11월 25일); 淸儒 梁啓超, 「政治學」, 『호남학보』 제7호(1908년 12월 25일); 淸儒 梁啓超, 「政治學」, 『호남학보』 제8호(1909년 1월 25일); 淸儒 梁啓超, 「政治學」, 『호남학보』 제9호(1909년 3월 25일).

37 李春世, 「政治學說」, 『기호흥학회월보』 제6호(1909년 1월 25일); 李春世, 「政治學說(續)」, 『기호흥학회월보』 제7호(1909년 2월 25일); 李春世, 「政治學說(續)」, 『기호흥학회월보』 제8호(1909년 3월 25일); 李春世, 「政治學說(續)」, 『기호흥학회월보』 제9호(1909년 4월 25일); 李春世, 「政治學說(續)」, 『기호흥학회월보』 제10호(1909년 5월 25일).

38 梁啓超, 『飲冰室合集』(中華書局, 2015), 549~555쪽.

39 飲冰室談叢 一吁生 譯述, 「世界最小民主國」, 『서북학회월보』 제2호(1908년 7월 1일).

40 “今夫國이란 者는 一家族의 結集體(西諺에 云 國家란 者는 家族 二字의 大書)며 歷史란 者는 一國民의 譜牒이라.” 신채호,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 『대한협회월보』 제2호(1908년 5월 25일).

41 梁啓超, 앞의 책, 274쪽.

42 “故로 今日에 列強의 民族帝國主義를 抵擋하야 浩劫을 挽호고 生靈을 救호하려면 오직 我가 我民族帝國主義를 行호는 一策이 有호고 民族主義를 中國에 施行코져 할진디 는 호홀디 新民을 舍호고 未由호지라” 李鍾冕(譯), 「支那 梁啓超 新民說」, 『교남교육회잡지』 제1호(1909년 4월 25일); “故今日欲抵当列强之民族帝国主义, 以挽浩劫而拯生灵, 惟

오정선(吳政善)은 「團合은 富強을 産하는 母」라는 글에서 “然則 最重한 元素는 種族을 相愛함이오 此 種族 相愛에 愛主權, 愛疆土, 愛自由 등을 加合한 者를 舉世皆曰 愛國心이라 하는도다”라고 종족상애를 강조하면서 애주권, 애강토, 애자유 등을 애국심이라 주장하였다.<sup>43</sup> 이러한 논조는 양계초의 「애국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4</sup> 이렇듯 양계초의 근대 정치학설과 국가·민족주의에 관한 사상은 근대 주권 개념이 한반도에서 소개되어 정착되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엿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양계초는 「논주권(論主權)」이란 글에서 주권이 유(有)하면 국가가 유하고 국가가 무(無)하면 주권도 무하다고 하면서 일민족의 단합은 국가의 형체가 없으므로 주권을 가질 수 없다는 블룬칠리(伯倫知理)의 학설을 소개하였다.<sup>45</sup> 이러한 주장은 신채호의 민족적 주권 인식과 선명한 대조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블룬칠리 주권론은 외적 주권이 문명국들의 승인에 의해 보장된다는 전제를 취하고 있고, 주권 승인 여부는 문명화되고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으로서 국민-네이션이라는 정치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사실 블룬칠리의 국민(Volk-nation)과 민족(Nation-people) 개념쌍을 받아들인 신채호도 처음에는 이러한 입장을 답습하였기에 「국민과 민족의 구별」 같은 논설에서 조선인이 문화적, 역사적 공동체인 민족을 넘어 일 군대와 같이 일사불란한 정치공동체로서의 ‘국민’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에 비해 1908년 후반

---

有我行我民族主义之一策, 而欲实行民族主义于中国, 舍新民末由.” 「新民說」(第二節論新民為今日中國第一急務),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 2021.5.28.)

43 吳政善, 「團合은 富強을 産하는 母」, 『대한학회월보』 제1호(1908년 2월 25일).

44 梁啓超, 앞의 책, 269~281쪽; 牛林杰, 『韓國 開化期文學과 梁啓超』(박이정, 2004), 78~79쪽 참조.

45 “或謂一民族相結合, 雖未具國家之體裁, 亦可謂之有主權. 此說亦非也, 彼民族者, 未能成為一「法人」(謂法律上之人格) 未有形不具而腦先存者也. 故有主權則有國家, 無國家亦無主權.” 梁啓超, 앞의 책, 1206쪽.

이래의 신채호는 문화적, 역사적 공동체인 민족을 그 자체로 주권의 정당성을 갖는 공동체로 새롭게 호명하면서 식민지 민족사상으로 나아가게 된다.<sup>46</sup>

이 시기에 신채호가 민족주의 정신의 구축에 주력한 것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로써 신채호의 주권 인식은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1917년에 조소앙, 박은식, 신채호 등 14명이 서명한 「대동단결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17년 7월 상해에서 박은식, 신채호, 박용만, 윤세복(尹世復), 조소앙 등 14명의 명의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의 작성자는 조소앙으로 알려져 있다.<sup>47</sup> 선언문은 본문과 제의의 강령, 선언 일자와 서명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8</sup> 14명의 발기인에는 재미 인사 외에 중국에서 활약하던 이들이 주축이 되었다. 그들은 대종교(大宗教)·동제사·신한혁명당과 관계가 깊은 경력의 인사였다.<sup>49</sup> 「대동단결선언」은 “오我韓은 無始以來로 韓人の 韓이오 非韓人の 韓이 아니라 韓人間의 主權受受난 曆史上不文法の 國憲이오”<sup>50</sup>라고 서술하며 ‘주권’ 용어를 선명하게 사용하였다. 선언에서는 주권(主權)이란 용어가 5회로 사용된 것 외에는 제권(帝權), 민권(民權), 성권(聖權)<sup>51</sup>, 특권(特權)

---

46 신채호, 「歷史와 愛國心의 關係」, 『대한협회회보』 제2호(1908년 5월 25일); 신채호, 「歷史와 愛國心의 關係(續)」, 『대한협회회보』 제3호(1908년 6월 25일); 신채호, 「帝國主義와 民族主義」,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8일자.

47 조동걸, 앞의 논문, 132쪽 참조.

48 「大同團結宣言 原文(1917.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歐米 3』, 국외 항일운동 자료: 일본 외무성기록([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 2020.5.20.) 참조.

49 조동걸, 앞의 논문, 135쪽.

50 「大同團結宣言 原文(1917.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歐米 3』, 국외 항일운동 자료: 일본 외무성기록([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 2020.5.20.)

51 “四 獨立平等의 聖權을 主張하여 同化의 魔力과 自治의 劣根을 防除할 것(4. 독립평등의 성권(聖權)을 주장하여 동화(同化)의 마력(魔力)과 자치(自治)의 열근(劣根)을 방제

등 주권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다.

「대동단결선언」 내용에 있어서 현재 학계에서는 “주권불멸론과 융희황제의 주권포기론을 근거로 국민주권설을 정립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이념을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적 통할체제(政府的統轄體制)를 계획하는 등 1917년까지 다양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52</sup>는 인식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달리 소수의 학자들은 「대동단결선언」이 주장한 국민주권이론은 사회계약론과 배치(背馳)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53</sup>

필자의 생각에는 “한인간의 주권수수는 역사상 불문법의 국헌”이란 표현에서 보면 주권의 양도는 한민족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국가가 아니라 민족국가를 전제로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한 관념은 국민이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선언의 국가는 사회계약설과는 다른 것이며 인민, 국민, 시민 등의 개념적 차이가 제거된 상태로서의 ‘민족’만이 사유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할 것) 「大同團結宣言 原文(1917.7)」,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歐米 3』, 국외 항일운동 자료: 일본 외무성기록([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 2020.5.20.)

52 조동길, 앞의 논문, 147~150쪽 참조.

53 “「대동단결선언」에서 표방된 국민주권설은 구한말 전래된 이래 공화주의 이념의 전거로 역할해 왔다. 하지만 이 논리가 서양의 천부인권설이나 사회계약설에 입각 하였던 데 반해, 대동단결선언에서의 국민주권론은 “민족사적 정통을 의식한 논리”로 전개되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韓相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2 해외민족운동 3)중국 관내지역」, 『신편 한국사』(국사편찬위원회, 2002), 232쪽.

#### IV.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에서 주권 용어의 도입

1919년에 이르러 각지에서 산재한 독립지사에 의해 「대한독립선언서」(1919.2.1. 중국 길림성), 「2·8독립선언서」(1919.2.8. 일본 도쿄) 등이 선후로 선포되었으며 특히 3월 1일에 한성에서 민족대표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외 각지에서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sup>54</sup> 이 중 노령, 상해 및 한성에서 선포된 임시정부가 대표적이다.

1919년 3월 17일 노령에서 대한국민의회 성립 선포에 이어, 4월 11일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월 23일에는 국내에서 한성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sup>55</sup> 이 세 개의 임시정부는 근 5개월 동안의 토의와 조합을 거쳐 9월 11일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정부수립과 함께 임시정부 헌장과 결의안이 반포되기도 하였다. 이 와중에 각종 선언문과 임시정부가 반포한 헌법적 문서들은 당시 독립운동지도자들의 주권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우선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및 「3·1독립선언서」에 주권 관련 서술을 분석한 다음, 대한국민의회의 「결의안」, 한성정부가 선포한 『약법』,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기초하여 통합된 정부가 반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주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분석함을 통해 주권 용어가 임정헌법에 삽입된 경위를 규명하여 그에 비추어진 독립운동지사들의 주권 인식을 밝히도록 한다.

54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역사공간, 2016), 95~96쪽 참조; 獨立有功者功勳錄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1993), 123쪽 참조;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上)』(民族出版社, 2009), 107~113쪽 참조.

55 위의 책, 95~96쪽.



## 1. 1910년대 독립선언서 및 정부 수립문서의 주권 서술

우선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김교헌(金敎獻) 등 39인의 명의로 만주 길림에서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작성자는 조소앙, 서명자는 김교헌, 김동삼을 비롯한 39명으로 당시 해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이 선언문에서는 대한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이고 자립국이라고 선포하면서 2천만 동포들에게 국민본령이 독립인 것을 명심할 것과 육탄혈전으로써 독립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였다.<sup>56</sup>

다음으로 「2·8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8일 조선청년독립당(朝鮮靑年獨立黨)의 명의 및 최팔용(崔八鏞), 이광수(李光洙) 등 11인의 서명으로 동경(東京)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서이다. 「2·8독립선언서」의 서두에서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자주독립국임을 강조하여 독립 근거와 그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문 부분에서 한민족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일제 통치의 부당성과 그 잔인성을 고발하면서 조선민족의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독립운동으로 건립될 국가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신 국가임을 명시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결의문 네 개 항을 제시하였다.<sup>57</sup> 이어서 1919년 3월 1일에 손병희 등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3·1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일본 동경, 만주 길림 및 한반도에서 선후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및 「3·1독립선언서」에서 사용된 주권 및 민족 용어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subCollection.do>, 2020.7.20.)

57 위의 자료.

표1-독립선언서에 주권 및 민족 용어의 사용 상황

	「대한독립선언서」 <sup>58</sup>	「2·8독립선언서」 <sup>59</sup>	「3·1독립선언서」 <sup>60</sup>
主權	0	2	0
主權에 관한 용어	11	8	6
民族	4	7	14
民族에 관한 용어	12	31	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독립선언서」 및 「3·1독립선언서」에서는 주권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2·8독립선언서」에서는 주권이 주권<sup>61</sup>, 중주권<sup>62</sup>의 형식으로 두 번만 사용되었다. 그리고 선언문에서는 직접 주권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주권 개념과 관련한 ‘외교권(外交權)’, ‘자유권(自由權)’, ‘생존권(生存權)’, ‘강권(強權)’ 등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정권(正權)’, ‘공존동생권(共存同生權)’ 등 용어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세 개 선언서에서는 민족 용어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또한 「대한독립선언」에 “我大韓은 無始以來로 我大韓의 韓이오 異族의

- 
- 58 「대한독립선언서」에는 ‘異族’, ‘同胞’ 등 민족과 관련한 용어가 대략 12번 사용되었으며 ‘強權’, ‘同權’ 등 주권과 관련한 용어가 대략 11번 사용되었다.
- 59 「2·8독립선언서」에는 ‘異族’, ‘吾族’ 등 민족과 관련한 용어가 대략 31번 사용되었으며 ‘外交權’, ‘警察權’ 등 주권과 관련된 용어가 대략 8번 사용되었다. 또한 「2·8독립선언서」의 결의안에 민족 용어가 2번 사용되었다. 여기의 7번은 결의안의 2번을 제외한 통계이다.
- 60 「3·1독립선언서」에는 ‘自由權’, ‘生存權’ 등 주권과 관련한 용어가 대략 6번 사용되었다.
- 61 “當時 俄國의 勢力이 南下하여 東洋의 平和와 韓國의 安寧을 威脅할시 日本은 韓國과 攻守同盟을 締結하여 日俄戰爭을 開하니 東洋의 平和와 韓國의 獨立保全은 實로 此同盟의 主旨와 韓國은 더욱 그 好誼에 感하여 陸海軍의 作戰上 援助는 不能하였으나 主權의 威嚴까지 犧牲하여 可能한 온갖 義武를 다하여서 東洋 平和와 韓國 獨立의 兩大目的을 追求하였도다.” 「2·8독립선언서」.
- 62 “及其 戰爭이 終結되고 當時 米國 大統領 루쓰벨트氏의 仲裁로 日俄間에 講和會議 開設될시 日本은 同盟國인 韓國의 參加를 不許하고 日俄 兩國 代表者間에 任意로 日本의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議定하였으며.” 「2·8독립선언서」.

韓이안이다 半萬年史의 內治外交는 韓王韓帝의 固有權이오” 등 서술<sup>63</sup>에서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고유권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내치와 외교가 포함되어 있는 고유권이 근대적 주권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의 소재는 한왕한제에게 있다고 서술하였다. 즉 「대한독립선언서」에 의하면 조선의 주권이 연속적인 것이며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고 그의 소재는 군주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대동단결선언」의 주권 사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말 지식인들의 군주주권 인식과 상통함을 엿볼 수 있다.

1919년 3월 17일에 만주와 아령(俄領)의 동포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한국민회의 설립을 선포하고 동 21일에 조직한 정부 결의안과 각원을 발표하였다. 5개조로 된 「결의안」의 제1조는 세계민족 자결주의에 기인하여 한국민족의 정당한 자주 독립을 주장한다고 천명하였다. 제2조는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을 부인하고 제3조는 파리평화회의 참석 및 정부 승인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는 주권에 관한 내용이다.<sup>64</sup>

四. 한국 독립운동의 실정을 세계에 선전하며 정부 건설의 사실을 각 국 정부에 통지하여 우리의 주권을 주장함<sup>65</sup>

63 “百萬方里의 高山麗水는 韓男韓女の 共有産이오 氣鼓文言이 歐亞拔萃한 我民族은 能히 自國을 擁護하며 萬邦을 和協하야 世界에 共進할 天民이라 韓一部의 權이라도 異族에 讓할 義가 無하고 韓一人의 土라도 異族이 占할 權이 無하며 韓一個의 民이라도 異族이 干涉할 條件이 無하며 我韓은 完全한 韓人の 韓이라.” 「대한독립선언서」, 1919년 2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12호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http://theme.archives.go.kr/next/nationalArchives/subPage/nationalArchives11.do>, 2020.7.20.)

64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 大韓民國臨時議政院文書)(國史編纂委員會, 1971), 2~3쪽.

65 위의 책, 3쪽.

위 조문은 각 국가의 정부에게 한국정부의 수립을 통고하고 대외적 주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로부터 새로 설립된 한국정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대외적 주권을 획득하려고 한 것이다. 비록 약법, 헌장 같은 헌법적인 문서가 아니지만 정부 결의안에서는 주권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외적 정부 승인을 통해 주권을 주장한 것은 선언 기초자가 주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23일에 발표한 6개조로 구성된 『약법』에는 주권 용어가 없었다. 『약법』 제1조 및 제2조는 국체는 민주제를, 정체는 대의제를 채용함이라 한다. 그리고 제3조는 국시, 제4조는 임시정부의 내정 및 외교 권한을 정한다.<sup>66</sup> 그러나 한성정부가 『약법』 이외에 발표한 일반 민중이 준수해야 할 6개 요건<sup>67</sup>에서는 ‘주권존숭(主權尊崇)’으로 주권 용어를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동족상구(同族相求)’로 민족적인 요건도 강조하였다.

또한 1919년 4월 10일~11일에 민족운동 지도자 30여 명이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제1회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개원(開院)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대한민국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의장(臨時議政院議長) 이동녕(李東寧) 및 국무총리(國務總理) 이승만의 명의로 선포되었다.<sup>68</sup> 4월 11일에 임시헌장을 기초 토의할

66 “約法 제1조 國體는 민주제를 채용함. 제2조 政體는 대의제를 채용함. 제3조 國是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의 幸運을 증진케 함. 제4조 임시정부는 다음 권한을 가짐. 一. 일체 내정 一. 일체 외교. 제5조 조선국민은 다음 의무를 가짐. 一. 납세 一. 병역. 제6조 본 약법은 정식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할 때까지 이를 적용함.”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별책)(국사편찬위원회, 2009), 23쪽.

67 “一. 爲國戰死 一. 同族相求 一. 仁義制暴 一. 政府服從 一. 合心合力 一. 主權尊崇 一. 財政義務.” 위의 책(2009 별책), 23쪽.

68 『開港 100年 年表資料集』,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020.7.20.)

새 심사위원으로 신익희(申翼熙), 이광수, 조소앙 세 사람을 임명하였다.<sup>69</sup> 1919년 4월 11일에 반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우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정하고 그 다음으로 인민의 평등, 권리, 의무 등의 내용을 천명하였다.<sup>70</sup> 그러나 이러한 10개조로 구성된 임시헌장에는 주권 용어가 나타나지 않으며, 함께 선포된 선언문(宣誓文)<sup>71</sup>과 정강(政綱)<sup>72</sup>에서도 주권 용어가

69 國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1971), 388~389쪽.

70 “大韓民國臨時憲章宣布文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야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 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에 我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야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야 此를 統治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教·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權及 被選舉權이 有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第7條 大韓民國은 神의 意思에 依하야 建國한 精神을 世界에 發揮하며 進하야 人類의 文化及 平和에 貢獻하기 爲하야 國際聯盟에 加入함. 第8條 大韓民國의 舊皇室을 優待함. 第9條 生命刑 身體刑及 公娼制를 全廢함. 第10條 臨時政府난 國土恢復後 滿 一個年內에 國會를 召集.”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헌법공보)(국사편찬위원회, 2005a), 3쪽.

71 “宣 誓 文: 尊敬하고 熱愛하난 我 二千萬 同胞國民이어 民國 元年 三月 一日 我 大韓民族이 獨立을 宣言함으로써 男과 女와 老와 少와 모든 階級과 모든 宗派를 勿論하고 一致코 團結하야 東洋의 獨逸인 日本의 非人道的 暴行下에 極히 公明하게 極히 忍辱하게 我 民族의 獨立과 自由를 渴望하난 實思와 正義와 人道를 愛好하난 國民性을 表現한 지라 今에 世界의 同情이 翕然히 我 國民에 集中하였도다. 此 時를 當하야 本政府가 全國民의 委任을 受하야 組織되었나니 本政府가 全國民으로 더부러 專心코 戮力하야 臨時憲法과 國際道德의 命하난 바를 遵守하야 國土光復과 邦基確國의 大使命을 果하기를 茲에 宣誓하노라 同胞國民이어 奮起할지여다. 우리 流하난 一滴의 血이 子孫萬代의 自由와 福榮의 價이요 神의 國의 建設의 貴한 基礎이니라. 우리 人道가 마참내 日本의 野蠻을 教化할지오 우리 正義가 마참내 日本의 暴力를 勝할지니 同胞여 起하야 最後의 一人까지 鬪할지여다”, 위의 책(2005 제1권 헌법공보), 4쪽.

72 “政 綱: 一. 民族平等·國家平等及 人類平等의 大義를 宣傳함 二. 外國人의 生命財産을 保護함 三. 一切 政治犯人을 特赦함 四. 外國에 對한 權利 義務난 民國政府와 締結하난 條約에 一依함 五. 絶對獨立을 誓圖함 六. 臨時政府의 法令을 違越하난 者난 敵으로 認함”, 위의 책(2005 제1권 헌법공보), 4쪽.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선서문에는 ‘민족’ 용어가 2번, ‘동포’ 용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다.

## 2.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주권 용어 삽입 경위

1919년 4월 10일부터 임시의정원은 제1회~제5회 회의를 진행한 다음으로 제6회 회의에서 임시헌법개정을 토의 및 심사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8월 18일에 임시의정원은 상해 프랑스 조계 장안리민단사무소내(長安里民團事務所內)에서 제6회 회의 개원식을 진행하였다.<sup>75</sup> 이후 1919년 8월 28일 임시헌법개정안 제1독회(臨時憲法改正案 第一讀會), 8월 30일~9월 3일 임시헌법개정안 제2독회, 9월 4일~5일 임시헌법개정안 제3독회 등 10여 일의 토의수정을 거쳐 9월 6일에 임시헌법개정안 의결이 통과되었다.<sup>76</sup> 그리고

표2-『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및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부분 조문 대조

	『大韓民國臨時憲章』(1919.4.11.) <sup>73</sup>	『大韓民國臨時憲法』(1919.9.11.) <sup>74</sup>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制로 함	大韓民國은 大韓人民으로 組織함
第2條	大韓民國은 臨時政府가 臨時議政院의 決議에 依하여 此를 統治함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第3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 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 平等임	大韓民國의 疆土는 舊韓帝國의 版圖로 定함
第4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信教·言論·著作·出版·結社·集會·信書·住所·移轉·身體及 所有의 自由를 享有함	大韓民國의 人民은 一切 平等함
第5條	大韓民國의 人民으로 公民資格이 有한 者는 選舉權及 被選舉權이 有함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이 行政權은 國務院이 司法權은 法院이 行使함
第6條	大韓民國의 人民은 教育 納稅及 兵役의 義務가 有함	大韓民國의 主權行使는 憲法 範圍內에서 臨時大統領의게 委任함

73 “神人一致로 中外協應하여 漢城에 起義한지 三十有日에 平和的 獨立을 三百餘州에 光復

1919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공포되었다.<sup>77</sup>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10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달리 5개월 후에 출범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8장 58조가 포함된 비교적 완비된 헌법이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비해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는 처음으로 ‘주권’ 용어가 삽입되었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민주공화제라는 획기적 규정과 대조하여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된 주권이 대한인민 전체에 있는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헌법 조문의 규정은 인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인민주권(국민주권)의 성향을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이라는 규정은 인민 대신에 대한인민이라는 표현으로 민족적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

1919년 8월 28일 헌법개정안 제1독회에서 국무원은 임시정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조완구의 본안설명을 청구하므로 안창호(安昌浩) 대리총리는 설명연설을 진행하였다. 이 개조안의 취지에 대해 안창호는 “현재 상해(上海)에 재(在)한 정부를 개조(改造)하되 한성(漢城)에서 발표된 각원(閣員)을 표준(標準)으로 하자 다만 집행(執政) 총재(總裁)를 대통령(大統領)으로 개정(改正)하자 함이니 임시헌법의 개정(改訂)도 실(實)로 차(此)를 위(爲)함이라”

---

하고 國民의 信任으로 完全히 다시 組織한 臨時政府는 恒久完全한 自主獨立의 福利에 我 子孫黎民에 世傳키 爲하여 臨時議政院의 決議로 臨時憲章을 宣布하노라.” 延世大現代韓國學研究所(편), 『梨花莊 所藏 雲南 李承晚文書』(東文篇6: 大韓民國臨時政府關聯文書1)(中央日報社·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122~123쪽.

74 “我 大韓國은 我 國이 獨立國임과 我 民族이 自主民임을 宣言하였도다. 此로써 世界 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스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였도다.” 위의 책, 46~56쪽.

75 “1919년 9월 17일에 임시의정원은 상해 프랑스 조계 靑飛路321號에서 폐원식을 거행하였다.” 國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1971), 405~407쪽.

76 위의 책, 406~407쪽.

77 위의 책, 11쪽.

고 밝혔다.<sup>78</sup> 이와 같이 안창호가 이 헌법개조안을 통해 정부수립의 대통일(大統一)의 중요성 및 긴급성도 강조하였다.

更言하거니와 이렇게 하는 中心 理由는 吾等의 前途에 最히 絶對로 必要한 統一을 得하려 함이여 [...] 現今 全國民의 愛國心과 統一의 要求는 날로 增加하여 各處의 個人及 團體로서 上海政府를 向하여 忠誠을 盡한다는 書信이 日至今 하나니 實로 大統一의 好機라 賢明하신 諸位는 統一을 爲하여 盡力하시기를 希望하노라.<sup>79</sup>

안창호에 따르면 당시 한민족의 앞길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통일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개인과 단체들의 애국심과 대통일의 열정이 커지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하였다.

1919년 8월 28일 의정원에 제출된 임시헌법 초안의 내용은 그 서문에서 먼저 “1919년 4월 11일 발표의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基)삼음을 언(言)하고”라고 천명하였으며 이어서 제1장 강령,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대통령, 제4장 의정원, 제5장 국무원, 제6장 법원, 제7장 재정, 제8장 부칙 총 8장 57조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8장 57조로 된 임시헌법 초안은 최종 공포한 8장 58조의 임시헌법과 구성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1919년 8월 30일 헌법초안 토의 제2독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조완구, 고일청(高一淸) 및 정부위원 신익희는 제2조를 둘러싸서 논의한 바 있다.

---

78 國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1971), 419쪽.

79 위의 책, 420쪽.



高一淸君이 憲法綱領 第二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全體에 在하다는 것을 引證하여 第五條의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에 在하다 함을 行使하다 하므로 改正하기를 主張하니 政府委員 申翼熙君은「몬테스크」의 政治論을 用하여 그의 無關함을 論하고 第五條를 高君의 主張과 如히 變更하며 第六約에 모순된다 又は 主權問題에 對하여는 慎重한 考慮를 要할 바이라 答辯하다

趙完(琬)九君의 追擊이 有한 後 高一淸君이「在」字 削除의 動議를 提出코 崔謹愚君이 贊成하다<sup>80</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일청은 헌법초안 제2조를 인증(引證)하여 제5조에 대해 동의(動議)를 제출하였다. 고일청은 서술한 헌법초안 제2조의 내용과 최종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2조와 대조하면 미소(微小)한 차이가 발견된다. 위의 글에서 고일청은 헌법초안 제2조는 “大韓民國의 主權은 人民全體에 在”하다고 하였으나 반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제2조는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이라 하였다. 여기서 초안의 ‘인민 전체’에 ‘대한’ 두 글자를 덧붙이고 헌법의 ‘대한인민전체’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는 회의록의 오차나 실제 변경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한 조문에서 ‘대한’이 두 번이나 강조된 것에서 헌법기초자의 민족과 국가의 감정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동의신청 행동에서 1919년 8월 28일에 국무원이 의정원에 제출한 임시헌법초안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인민전체에게 있다는 조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19년 8월 28일 전 국무원이 임시헌법개정안을 작성한 과정에서 ‘주권’ 용어는 이미 초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의정원의 헌법개정안 기록에 따르면 그 후 제3독회부터 헌법 초안이 통과될 때까지 제2조에 대해 토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

80 위의 책, 422쪽.

1919년 9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조는 1919년 8월 28일 국무원이 제출한 헌법개정안<sup>81</sup>과 같이 3회의 독회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선포되었다는 추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글을 통해서 임시헌법 초안의 제5조는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에 在하다 함을 行使하다”는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일청은 “大韓民國의 主權은 大韓人民 全體에 在함” 및 “大韓民國의 立法權은 議政院에 在하다”는 내용은 부적당하므로 제5조의 ‘在(在)字(字)’를 삭제(削除)하자는 동의 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신익희는 몽테스키외의 정치론을 원용하면서 제2조와 제5조는 무관한 것을 논정하며 만약 제5조를 변경하면 제6조도 이에 따라 모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82</sup> 여기서 주권 소재 및 주권 행사의 문제를 둘러싸서 논의한 것이며 고일청과 신익희의 주장에 모두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익희는 루소의 주권 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이 사회계약을 함으로써 정치체가 형성하게 되며 또한 이 계약은 ‘정치체’에 개인을 지배할 수 있는 주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권의 행사방식은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최고 의사의 존재에서 연기된 것이므로 결코 분할불능인 것이다.<sup>83</sup> 그러므로 주권의 소재와 주권의 행사는 다른 문제이며 초안 문서상으로 제2조와 제5조는 모순이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서양 근대 주권 이론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고일청 및 신익희 등 일부 기초자들이 주권 문제를 토의하며

---

81 “臨時政府國務總理代理는 八月二十八日에 臨時憲法改正案과 併히 政府改造案을 本院에 提出하니 其全文은 左와 如하더라”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제2권 임시의정 I)(국사편찬위원회, 2005b), 43쪽; “도산은 8월 28일 임시정부 개조안과 헌법 개조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면서 법적 절차도 마무리 지었다.” 장석홍, 『(한국 독립운동의 혁명 영수)안창호』(역사공간, 2016), 101쪽.

82 國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1971), 422쪽.

83 조공호·강정인, 앞의 책, 337쪽.

특히 신익희는 서양 주권 이론을 원용하면서 주권 관련 주장을 펼친 것을 통해 일부 의원은 근대 주권 사상을 인지하며 주권 문제를 중요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조문이 초안부터 헌법 반포될 때까지 유지되었고 주권의 소재 문제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5조에 대한 동의가 제기될 만큼 당시 헌법기초자들에게 국민주권 인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임시헌법에는 대통령만 의정원에서 선거하고 국무총리 이하의 각 국무원은 대통령이 임명케 함과 주권의 행사를 대통령에게 위임함이 임시의정원법과 특이(特異)한 점(點)<sup>84</sup>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제6조는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위임함이라는 것이고 주권 행사에는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 등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제5조의 내용은 임시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대통령은 주권 행사 즉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 등의 행사를 관할하는 권한이 있으며 이전 군주주권의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완구의 제의(提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9월 4일 임시헌법개정안 제3독회에서 조완구가 구황실우대 조문을 토의하면서 주권 용어를 언급한 바 있다.

趙琬九氏가 皇室(優待件)을 삽입하는 意見을 提出하니 그 理由를 氏는 述하여 曰 民主國 憲法에 皇室을 云云함이 不可하다 합일지나 此를 入我함은 我民族 統一의 一方針이 되리라 或 此項을 拔去한 結果 人民의 反抗을 살까 두려워하며 더우기 我前皇室은 敵에게 主權을 被奪한 것이라 하여 楚 懷王의 例를 들다.<sup>85</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완구는 민주국 헌법에는 황실에 대한 규정이

84 國史編纂委員會(編), 앞의 책(1971), 421쪽.

85 위의 책, 426쪽.

없으나 조선민족의 통일 및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황실우대의 조문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황실은 적에게 주권을 피탈한 것이라는 서술에서 이전에 주권이 황실에게 있었음을 주장하는 조원구의 인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주권 관련 인식은 「대동단결선언」에 나타난 주권 주장과 상통한다고 보이며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의 직접 교체로 재차 엿볼 수 있다.

## V. 맺음말

---

본고는 1910년대 《신한민보》에 게재된 주권 관련 글, 1917년 7월에 공포된 「대동단결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등 대표적인 헌법문서를 고찰함으로써 한일합병 이후 재미한인과 재중한인의 주권 인식을 탐구하였다. 본문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신한민보》에는 직접적으로 주권이나 주권자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극히 소수이다. 일부 글은 정치나 대한제국의 형세를 바라볼 때 ‘주권’이라는 용어보다는 권세, 정권, 국권, 민권 같은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권의 사용 빈도에 비해 다수의 글에서 동포, 민족, 민족단합이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한일합병 이후 재중한인은 민족주의적 주권 인식이 강해 보인다. 특히 1917년 7월 상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에서는 구한국이 끝나는 날이 곧 신한국이 시작하는 날이라는 이유에 대해 한국이 오랜 옛날부터 한인(韓人)의 한(韓)이고 비한인(非韓人)의 한(韓)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다. 「대동단결선언」에서 이러한 민족사의 시각에서 주권을 인식하는 현상이 형성된 원인은 필자는 민족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대동단결선언」의 14명 발기인 중 한 명인 신채호는 1909년 5월 28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논설을 통하여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민족주의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박은식도 잡지나 신문에서 발표한 여러 글에서 민족, 동포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당대 민족주의의 주조에 일조한다고 본다.<sup>86</sup> 또한 「대동단결선언」의 주필로 알려진 조소앙이 후일 제창한 삼균주의(三均主義)는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이며<sup>87</sup>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완전한 균등(均等)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동단결선언」이 발표된 시점은 조소앙이 삼균주의 사상을 온양(醞釀)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당대 한민족간에 일어난 민족주의 풍조에 「대동단결선언」에 주권 관련 서술에도 민족주의 색채가 강해 보인다. 이러한 민족주의 색깔을 띤 주권 서술은 민족적 주권인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당시 국내외 여러 요소의 조합에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에는 처음 주권 용어를 삽입하여 근대 국민주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1919년 8월 28일부터 임시헌법 초안은 10여 일간에 세 번의 독회를 거쳐 1919년 9월 11일에 8장 58조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으로 공포되었으며 제2조에서 주권 용어가

86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박은식과 신채호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9권 제3호(2016), 239~265쪽 참조.

87 정영훈, 「조소앙의 단군민족주의와 삼균사상」, 『단군학연구』 제38호(2018), 263쪽; 「삼균주의의 형성시기라고 할 1910년 후반부터 1920년대 말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조소앙의 사상경향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사회주의와 삼민주의였다고 추측된다.」 裴京漢, 「三均主義와 三民主義」, 『중국근현대사학』 제15집(2002), 14쪽.

처음으로 헌법에 삽입되었다. 헌법기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의원들이 국민주권에 대해 일치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권 문제를 중요시하며 근대 주권 이론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주권 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군주주권 사상의 흔적 및 근대 주권 개념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이 노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이란 용어의 강조 및 황실 주권 서술은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근대 주권 개념이 한인간에 민족적이고 단절적인 국민주권 인식으로 변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완의 과제는 후세에게 남겨주었지만 대한민국과 전국민중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국민주권 개념은 한국에서 잘 정착한 것을 엿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新韓民報》, 『호남학보』, 『기호흥학회월보』, 『서북학회월보』, 『대한협회회보』, 『교남교육회잡지』, 『대한학회월보』, 『대한매일신보』.

「3·1독립선언서」, 「2·8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대동단결선언」.

國史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資料』(2.大韓民國臨時議政院文書).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71.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헌법공보).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a.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2권 임시의정 I).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b.

\_\_\_\_\_,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별책).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9.

韓國學文獻研究所(編), 『韓國近代法制史料叢書-第1卷 萬國公法』, 서울: 亞世亞文化社, 1981.

獨立有功者功勳錄編纂委員會(編), 『韓國獨立運動史』, 서울: 國家報勳處, 1993.

延世大現代韓國學研究所(편), 『梨花莊 所藏 零南 李承晚文書』(東文篇6:大韓民國臨時政府關聯文書1). 서울: 中央日報社·現代韓國學研究所, 1998.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中華書局, 2015.

### 2. 단행본

강동국, 「근대 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형성사』, 서울: 창비, 2009.

김효전, 『헌법』, 서울: 小花, 2009.

權純永 외, 『法律用語辭典』, 서울: 法典出版社, 1979.

권오영, 『근대 이행기의 유럽』, 과주: 돌베개, 2012.

박상섭, 『국가·주권』, 서울: 소화, 2008.

牛林杰, 『韓國 開化期文學과 梁啓超』. 서울: 박이정, 2004.  
장석홍, 『(한국 독립운동의 혁명 영수)안창호』. 서울: 역사공간, 2016.  
최기영, 「해제」, 『新韓民報(全27卷)-第2卷 新韓民報, 1909.2~1911.6(第119~235號)』.  
서울: 景仁文化社, 1991.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서울: 역사공간, 2016.

石源華, 『韓國獨立運動與中國關係論集(上)』. 北京: 民族出版社, 200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 『現代漢語詞典』(第6版).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3. 논문

구선영, 「국제관계 형성의 기점으로서의 베스트팔렌 신화 재고: 각국의 역사적 문맥에 배태된 다양한 주권 개념 형성에 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59권 제2호, 2019, 7~50쪽.  
裴京漢, 「三均主義와 三民主義」. 『중국근현대사학』 15, 2002, 1~16쪽.  
신용하, 「신채호의 생애와 사상과 독립운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서울: 景仁文化社, 2010, 73~101쪽.  
왕신, 「개항기 조선에서의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의 전래」. 『韓國史學報』 제80호, 2020, 151~179쪽.  
\_\_\_\_\_, 「한말 법학 교과서에 나타난 주권 개념 연구: 『헌법(憲法)』, 『법학통론(法學通論)』, 『평시 국제공법(平時 國際公法)』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46호, 2021, 195~232쪽.  
장신, 「일제하 민족주의 역사학의 유통: 박은식과 신채호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9(3), 2016, 239~265쪽.  
전재성, 「탈식민 국제정치학 이론과 한국」. 『국제정치논총』 제59권 제4호, 2019, 173~205쪽.  
정영훈, 「조소앙의 단군민족주의와 삼균사상」. 『단군학연구』 제38호, 2018, 223~271쪽.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 9(0), 1987, 123~170쪽.  
최기영, 「특집: 오늘의 한국사연구: 구한말 『공립신보』, 『신한민보』에 관한 일고찰」.



『동아연구』 17(0), 1989, 575~607쪽.

\_\_\_\_\_, 「신채호의 언론활동」,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서울: 景仁文化社, 2010, 103~134쪽.

韓詩俊, 「중국 관내 독립운동과 신문 잡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1998, 1~23쪽.

#### 4.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국외 항일운동 자료-일본 외무성기록([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haf.html)).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earch.i815.or.kr/subCollection.do>).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https://plato.stanford.edu/>).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s>).

## 국문초록

본고는 1910년대 《신한민보》에 게재된 주권 관련 글, 1917년 7월에 공포된 「대동단결선언」 및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등 대표적인 헌법문서를 고찰함으로써 한일합병 이후 재미한인과 재중한인의 주권 인식을 탐구하였다.

19세기 초에 변동하는 내외 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채호를 비롯한 일부 지식인이 주권 용어와 민족 용어를 연결시켜 논의하거나 '족'에 관련한 글을 대폭 게재하면서 민족주의 사상을 주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와중에 국가 주권을 대신하여 한민족의 주권을 선포한 것은 민족적 주권 인식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단결을 중요시하며, 1917년에 신채호, 박은식, 박용만, 조소앙 등 14인의 발기로 공포된 「대동단결선언」에서 군주주권에서 민족주권으로 전환하는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은 서양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한반도로 전래되어 재래의 주권 용어와 융합 및 정착되는 과정에서 내외적 요소에 따라 민족적 주권 개념으로 변용되었다. 1919년 9월에 반포된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주권 용어가 삽입되었으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명시된 획기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내외적 요소의 자극 하에 형성된 민족적 주권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이 법정화된 것은 당시의 주권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근대 주권(sovereignty) 개념을 한반도의 민족적 주권 인식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투고일 2022. 3. 10.

심사일 2022. 7. 29.

게재 확정일 2022. 8. 12.

주제어(keyword) 주권(Sovereignty), 『대동단결선언』(『Daedong Unity Declaration』), 『대한민국 임시헌법』(『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민족주의(Nationalism)

## Abstract

###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Modern Sovereignty and Legalization of Sovereignty Terms after the Merger between Korea and Japan

Wang, Chen

This paper examined the perception of sovereignty of Koreans abroad and the legalization process of sovereignty terms after the merger between Korea and Japan, taking the “Sinhan Minbo(新韓民報)” and representative constitutional documents such as “Daedong unity declaration (大同團結宣言)”, “Provisional Charter of the Republic of Korea”(1919.4.11.),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919.9.11.) as the objects of research.

In the early 19th century, some intellectuals, including Shin Chae-ho, started to mold nationalist ideology by linking sovereignty and ethnic terms or by extensively publishing articles related to “tribe (族)” to deal with the changing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In particular, the declar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Korean people instead of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can be seen as the emergence of national awareness of sovereignty. This perception emphasized national unity and clearly expressed the intention to shift from monarchy to national sovereignty in 1917 in the “Daedong unity declaration”, which was promulgated by 14 people including Shin Chae-ho, Park Eun-sik, Park Yong-man, and Jo So-ang.

In this way, the concept of sovereignty was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West via a convoluted path, and in the process of fusion with the traditional term *jookwon*, it was influenced b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nd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As the term “sovereignty” was inserted in the Provisional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proclaimed in September 1919, it wa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term “sovereignty” was utiliz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legaliz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based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sovereignty formed under the stimulu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reflected the idea of sovereignty at that time. This can be said to be a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sovereignty as a recognition of national sovereignty on the Korean Peninsula.

